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6-87
----------	-------

제출년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보전하여 주택가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2조)

나. 구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 1)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 근거 마련
- 2)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조사 실시

다. 재활용품 수집인의 선정 및 임무(안 제5조 및 제6조)

1) 재활용품 수집인의 선정

-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중에서 수집인 선정

2) 재활용품 수집인의 임무

-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
-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라. 비용의 지원

- 1)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2)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인에게 수집보상금 지원
- 3) 수집인에 대한 지원은 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6. 8. 11. ~ 8. 31.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다.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권고사항 있음

평가대상	권고사항	조치사항
제5조 (수집인선정)	수집인 선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결정주체, 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권고.	○ 권고의견 반영 - 수집인 선정기준 구체화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6. 10. 11)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바. 비용추계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수집인 선정)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2. 관내 재활용쓰레기 발생량 대비 필요인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에 관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임무) 수집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2.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
3.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제7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줄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 제7조(비용의 지원 등)

-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한 각종 물품 구매,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보전

2. 비용추계의 전제 -: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소요 기금 및 내역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 재활용품 수집인 수집보상금		85,200	85,200	85,200	85,200	85,200	426,000
	○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물품구매		9,940	9,940	9,940	9,940	9,940	49,700
	소계(b)		95,140	95,140	95,140	95,140	95,140	475,700
□ 총 비용(a-b)			95,140	95,140	95,140	95,140	95,140	475,700

4. 재원조달 방안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편성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95,140	95,140	95,140	95,140	95,140	475,700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합계			95,140	95,140	95,140	95,140	95,140	475,700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행정국 청소행정과 임종훈
연락처	02-3153-9225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인 수집보상금	85,200	85,200	85,200	85,200	85,200	426,000
	소 계 (a)	85,200	85,200	85,200	85,200	85,200	426,000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구입	9,940	9,940	9,940	9,940	9,940	49,700
	소 계 (b)	9,940	9,940	9,940	9,940	9,940	49,700
□ 총 계(a+b)		95,140	95,140	95,140	95,140	95,140	475,700

<산출기초> 2017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편성(안)

구 분	소요비용	산출내역	예산과목
합 계	95,140		
수집인 수집보상금	85,200	· 50,000원×12월×142명=85,2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수집인 안전장비 및 물품	9,940	· 야광모 : 50,000원×142명 = 7,100 · 야광조끼 : 20,000×142명 = 2,84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